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8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녹색기술 기업 추가 등 (서왕진 의원안)	3

I. 개요

1.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9. 19.
- (3) 회 부 일 : 2024. 9. 20.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10조제1항 등).

다.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3항).

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녹색기술 기업 추가 등 (서왕진 의원안)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내용: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5~30%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20	-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30	1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감소 ○ 적용기한: 2025. 12. 3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2030. 12. 31.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R&D 세액공제(제10조) ○ <u>녹색기술에 대한 공제 신설</u> - <u>대·중견 40~50%, 중소 50~60%</u>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최대 28	15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현행	개정안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주식등 취득·인수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 ○ 요건: - 외국법인의 지분비율 50% 이상 취득 - 경영권 확보시 지분비율 30% 이상 취득 ○ 특례: 인수가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5. 12. 31.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주식등 취득·인수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u>녹색기술</u>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적용예외: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적용예외: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 <u>녹색기술</u> 관련 중고품은 적용대상에 포함 ○ <u>녹색기술연구개발·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 신설</u> - 기본공제: 대·중견 25%, 중소 35% - 추가공제: 3% * 적용기한: 2030.12.31.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서왕진의원안 2024. 9. 19. 발의(의안번호 4082)

□ 개정안은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2030년 말까지 적용하려는 것이고, ② 녹색기술에 대한 R&D 공제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며, ③ 녹색기술과 관련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④ 주식등 취득·인수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녹색기술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¹⁾를 감면하는 것임.

1992년 신설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율]

구 분		지역 및 업종	감면율(%)
기업규모	소기업	도매업등(의료업 포함) 업종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2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 업종	5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15

1)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일반 R&D 세액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²⁾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20~3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³⁾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 반	최대 2	8~15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공제됨.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규정한 반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규정하여 일반 시설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주식 등 취득·인수시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함.

국가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특정 기술이 녹색기술에 해당하는지 인증하는 ‘녹색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임.⁴⁾⁵⁾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2010년에 녹색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 신청은 총 8,950건이고 인증은 총 4,958건임. 2023년에는 670건이 신청되었고 380건이 인증되었음.

[녹색기술 인증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4,234	2,330	572	320	536	245	522	274	530	318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553	310	638	387	695	394	670	380	8,950	4,9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여 녹색기술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녹색기술 R&D와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여 UN에 제출한 상황임.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할 수 있다.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제정되었는데, 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수준은 84.5%로 미국(100.0%) 및 EU(95.8%)에 비해 낮은 수준임.⁶⁾ 또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액은 상위 10개국 평균의 13.3%로 투자가 저조한 수준임.⁷⁾

개정안에 따라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술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녹색기술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녹색기술 외국법인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녹색기술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부문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둘째,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이 확산되고 탄소중립, ESG가 투자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을 확대하고 공급망 전반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09년 이후 전 세계 녹색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6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약 2조 5,000억 달러) 대비 약 3배 확대되었음. 또한, 넷제로 목표를 법안 또는 정책으로 명시한 국가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75%로 2020년 기준 7%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⁸⁾

6)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2 기술수준평가', 2024. 2.

7) 아산나눔재단,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2023.

탄소중립이 산업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녹색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EU의 CBAM 제도⁹⁾ 등 각국의 녹색 관련 규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개정안의 세제지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기술 기업이 변화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다른 주요국에서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녹색기술 기업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EU, 미국 등 주요국은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지원과 세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 시설 구축 등에 대해서도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동향과 시사점」, 2023. 12.

9) CBAM 제도는 非 EU 국가에서 생산되어 EU 영역 내로 수입되는 6개 범주(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화학물질-수소, 전기) 품목군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확인, EU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carbon price)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EU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최근 발표된 녹색기술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별 지원 정책 비교]

국가	연관 정책/법안	주요 지원 내용
EU	· 그린딜 산업계획 · 넷제로산업법	· [보조금] 넷제로 핵심 기술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2025년) · [금융 지원] 유럽수소은행, 유럽국부펀드 설립 예정
미국	· 초당적 인프라법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세제 혜택] 무탄소 발전 지원(30달러/MWh), 지속가능한 항 공유 생산·혼합연료 지원(최대 1.75달러/gallon), 청정수소 탄소 집약도에 따른 차등 지원(0.6~3달러/kg) 등 · [금융 지원] 청정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출, 보증 지원(약 400억 달러)
일본	· 그린성장전략 · GX추진전략	· [세제 혜택] 탄소중립 설비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50% 특별감가상각 제공 · [금융 지원]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2조 엔) · [예산 확대] GX경제이행채(20조 엔) 발행 예정, 녹색전환(GX) 관련 예산안(총 1조 985억 엔, 2024년) 발표
프랑스	· 녹색산업법	· [세제 혜택] 친환경 투자에 대한 20~45% 세액공제(2024년부터 시행 예정) · [금융 지원] 녹색 대출, 대출 보증, 중소기업 보조금 등
캐나다	· 2023년 예산안	· [세제 혜택] 청정기술·제조 투자에 대한 30% 세액공제, 청정수소 탄소 집약도에 따른 차등적(15~40%) 세액공제, 넷제로 기술 제조 기업 소득세 인하 기간 연장(2029년 → 2032년) 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동향과 시사점」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양한 녹색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기술보다 더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에너지·환경’ 기술 내 오염방지·자원 순환 기술, ‘탄소중립’ 기술 내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수소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기술을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녹색기술들은 현행법에서도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함.

둘째, 녹색기술 관련 중고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초 취득시 이미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고품에 대해 다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이중지원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

또한, 중고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면 기업이 중고품의 매입과 매각을 반복할 때, 실질적인 투자 유인효과는 없으면서 세액공제만 중복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보다 녹색기술에 대해 더 높은 R&D 및 투자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안보 등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녹색기술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른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최대 2	8~15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녹색기술	40		50	최대 10

[개정안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25		35	3

넷째,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공공조달에서 녹색인증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서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녹색인증 지원혜택 현황]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공공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녹색인증 가점(신인도 1.5점)
		다수공급자 계약	녹색인증 가점(사전 15점, 1단계 2점)
		우수조달물품지정	녹색인증 가점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	심사대상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녹색기술활용 제품 포함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중소기업 유통센터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무화 (15%) 대상제품에 포함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 매 대상제품에 녹색기술제품 포함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혁신제품 지정제도	녹색인증 가점(2점)
사업 화 지원	특허청	특허 우선 심사제도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우 선심사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	사업화 연계 담보대출연계 투자연계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	녹색인증, 녹색기업에 가점 1점
	한국환경 산업 기술원	2023년 환경산업체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녹색인증, 녹색기업에 가점 10점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지원사업	녹색기술인증 취득기업 가점 2점
금융 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녹색기술 인 증 포함
	기술보증 기금	보증한도 우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녹색인증기 업 포함, 보증한도 70억
	신용보증 기금	보증한도 우대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 업에 녹색인증 포함, 보증한도 70억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점지원분야, 최대대출한도 우대대상 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Net-Zero 유망기업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녹색기술인증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한국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정책자금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 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 함
	대한무역 투자 진흥 공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참가비, 행정서비스, 해외마케팅 지원 -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 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사후 실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사업	비지원 -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우대조건(가점)에 녹색인증기업 포함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사업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택1)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기타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건설/교통신기술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시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첨단기술성) 최대가점(10점)부여
	한국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신기술	1차 서류심사시 완성도 항목에 최고배점(15점) 부여

주) 2023년 10월 조사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155